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만 해당

※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 **(지원내용 및 신청시기)** 지원 대상자 채용 후 6개월 단위 신청(1년 지원),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최대 월 30만원 지원

구분	6개월 지원금액	1년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360만원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최대 180만원	최대 360만원

* 다만,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있는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 **(근로자)** 구직등록 미필자, 계약직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등
- **(감원방지)** 지원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 시 지원 제외
- **(신청기간)** 대상자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고용센터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대상 세부 목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사업주, 근로자) 등 / (이수면제자 추가제출서류)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 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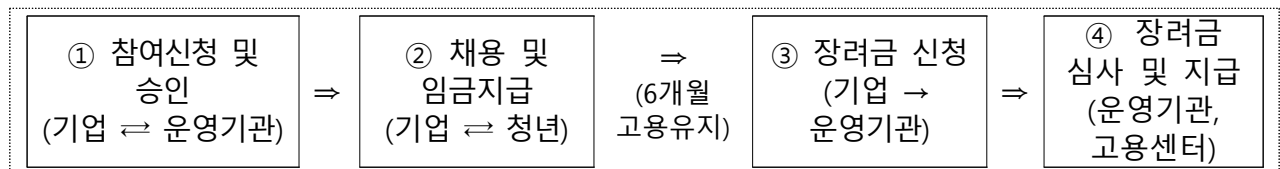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60명)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신청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지원제외직무* 외의 직무에 신규고용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 및 고용 후 신중년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지원제외직무는 고용센터 홈페이지 확인)

※ 지원제외 사업주: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유흥업 등,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 체불 명단공표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주, 신청기간(제척기간) 도과 후 장려금 신청 사업주

- **(지원내용)** 1년의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고용 이후 6개월 평균 신중년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 전 6개월 평균보다 초과 시 지원

구분	6개월 지원금액	1년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480만원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최대 240만원	최대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지원(월할 계산 불가)

- **(지원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인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이 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지원

□ **(지원요건)**

- ①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 ②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③ 고용보험 가입
- ④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⑤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⑥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있는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지원 제외
- ⑦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확인서 등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사유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① 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하고 사중손실이 큰 직무(19개)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기타 종교종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42	경비원
	550	요양보호사·간병인·육아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1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
	562	검침·주차 관리·검표원·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22	택시·버스·화물차·특수차·기타 자동차 운전원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채굴 기능원 (광원·채석원·석재절단원·철로설치 및 보수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등)
	861	섬유 제조·가공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재단사·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수선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조경원 포함)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② 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 직무(10개)	523	도어맨·룸서비스맨·벨맨 등 숙 박시설 서비스원	524	노래방·PC방 등 오락시설 서비스원
	532	식당 서비스원(음식 배달원 포함)	613	텔레마케터
	615	판매 종사자 (가스충전·주유원 포함)	616	매장 계산원 및 대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4	택배원·기타 운송 종사자 (납품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배송기사, 배송운전원,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배달원·분류원, 우편물 집배원, 선박승무원, 하역·적재 종사원, 기타 배달원)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③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이 필요한 직무(9개)	023	회계사·세무사·관세사·감정 전문가	211	대학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21	변호사·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
	301	의사·한의사·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한약사	414	화가·국악인·지휘자·연주가·성악가· 무용가 등 창작·공연 전문가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④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직무(4개)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5	정부·공공행정 사무원
	240	경찰관·소방관·교도관	250	군인

2023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사업주

□ **(지원내용)**

▷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200만원 (최초 3개월), 이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30만원 (1~3호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 (1~3호 인센티브) 최초로 육아기근로단축을 첫 번째~ 세 번째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 추가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동안 지원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0만원	8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임신기)이어 출산휴가의 경우 육아휴직(임신기) 2개월전까지 대체인력 인정

□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조정제한의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간(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 시 지원제외

□ **(신청방법)**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고용센터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지급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고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

*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 등

□ **접수처 및 문의**

▶ 전주고용복지+센터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지원대상)**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대하여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합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액>

※ 임금감소 보전금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 미지급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20만원(정액)	240만원

※ 간접노무비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30만원(정액)	360만원

□ (지원요건)

- **(근로자)**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자
- **(사업주)**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등록,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사전 명시), 초과근로(출·퇴근 시각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 제한,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이면 지급)
- **(지원제외)** 출퇴근 누락일수 월 3일 초과, 초과근로 월 10시간 초과, 최저임금액 미달,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 및 공공기관, 일반 유흥 및 gambling 등 업체, 임금채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의 경우 3명)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취업규칙 등 제도도입 증빙서류,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 출퇴근 확인 자료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

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월 단위로 산정(산정단위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

구분	내 용	지원금액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월6~11일 활용: 월15만원 월12일이상 활용: 월30만원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1년간 최대 360만원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1인당 월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

□ **(지원인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10명 미만인 경우 3명), 최대 70명 한도

□ **(지원요건)**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 관리

구 분	근태관리 기준
재택·원격 근무제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 확인 가능한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동의서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해당 월의 ①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②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 선정동의서 제출)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재택·원격근무제는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일을 제도 활용일에서 제외하고,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제외)**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유연근무 활용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대상 세부 목록, 유연근무 활용 전후 각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 근로자 확인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및 취업규칙(선택근무제인 경우) 등

②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제외: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 받고있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시스템 구축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참여 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참여

○ **(근무혁신 인프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주 대상, 근무혁신 등급에 따라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비율 한도: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50%

○ **(사용의무기간)** ①(구축형) 3년, ②(사용료 방식) 개별 약정기간(최대 3년)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ERP,기업전용이메일·메신저,서버,스토리지,업무용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원격접속,정보유출방지,자료백업·복구,사용자인증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기반의ERP,클라우드사용료,재택근무자의인터넷사용료 등(최대 3년)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 **접수처 및 문의**

▶ 전주고용복지+센터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제외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채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주,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 시 지원

- ①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정)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③ 고용보험 가입
-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정액 지급)

구분	1개월 지원금액		월 최대 지급액	연 최대 지급액
	간접노무비	임금증가액 보전금		
임금증가분 20만원 이상	30만원	20만원	50만원	600만원
임금증가분 20만원 이하	30만원	-	30만원	360만원

*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으로 인건비를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동일기간 중복수급 제외

□ (지원한도)

- ①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 한도 없음
- ②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고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사업주, 근로자) 등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지원목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연장·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 **(지원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

-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

* 계속고용제도란 ①정년의 1년이상연장, ②정년의 폐지, ③정년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근로자 등 지원 제외

□ **(지원수준 및 한도)**

-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원(계속고용제도시행일 이후 5년 이내 정년 도달자)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 **(신청방법)**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등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 **(지원목적)**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

□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 1년이상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고령자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 월평균고령자수=1년초과하는 60세이상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제외), 최저임금 미만인자 지원 제외

□ **(지원수준 및 한도)**

-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분기 30만원씩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고령자 수 =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방법)**

-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최초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제출·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임금대장 등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및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연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등 요건 충족
-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휴업 실시,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휴직)**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기간 및 휴직수당(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근로자 직접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실시, 90일 미만 운영된 사업의 사업주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미경과자, 대표자 및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거친족, 등기이사, 유급휴직 중 타 회사에 이중 취업한 자 등
 - **(감원방지)** 고용유지조치 시행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 시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신고서 제출, 매월 고용유지 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 1개월 전까지 계획신고서 제출, 심사위원회 승인 후 고용유지조치 실시, 매월마다 지원금 신청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